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1
----------	------

발의년월일 : 2016년 4월 20일

발 의 자 : 우미경 의원(1명)

찬 성 자 : 이종필, 이석주, 남재경,
김용석(서초), 이승로,
김희걸, 성중기, 이해경,
김기대, 서윤기 의원(10명)

1. 제안이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함께 있어”를 “할 때”로 하고,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며, “주재”를 “주관”으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하고, “관할 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며,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대하여는”을 “대해서는”로 하며,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에 불구하고”를 “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이율”을 “이자율”로 하고,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관할구청장”을 “관할 구청장”으로 하고, “없는 한”을 “없을 때에는”으로 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개발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요청함에 있어”를 “요청할 때”로 하고, “지정하고자 하는”을 “지정하려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주재”를 “주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재자”를 “주관자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4조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하고,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관할 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나목 “국·공유지”를 “국유지·공유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에 불구하고”를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2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3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율”을 “이자율”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1조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5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관할구청장”을 “관할 구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p> <p>「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u>요청함에 있어</u> 도시개발구역으로 <u>지정하고자 하는</u> 구역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p>	<p>제2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 ---</p> <p>-----</p> <p>-----</p> <p>-----</p> <p>-----</p> <p>-----</p> <p>----- <u>요청할 때</u> -----</p> <p>----- <u>지정하려는</u> -----</p> <p>-----</p> <p>-----</p> <p>-----</p> <p>-----</p> <p>-----</p> <p>-----</p> <p>-----</p> <p>-----</p>
<p>제3조 (공청회 개최)</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공청회를 <u>주재</u>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u>주재자</u>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p>	<p>제3조 (공청회 개최)</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주관</u> -----</p> <p>-----</p> <p>-----</p> <p>-----</p> <p>-----</p> <p>③ ----- <u>주관자</u> -----</p> <p>-----</p> <p>----- <u>범위에서</u> -----</p> <p>-----</p> <p>-----</p>

<p>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생략)</p>	<p>-----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구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제안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수용하기로 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u>기한 내에</u> 지정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u>범위 내에서</u>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4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p> <p>----- ----- ----- ----- ----- ----- ----- ----- ----- ----- <u>기한</u> <u>까지</u> ----- ----- <u>범위에서</u> ----- -----.</p>
<p>제5조 (정관작성 세부기준)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정관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도시개발구역이 속한 해당 자치구의 <u>관할 구역</u> 안에 둔다.</p> <p>4. (생략)</p> <p>5. 조합의 임원은 다음 <u>각목</u>의 기준에 맞도록 둔다.</p>	<p>제5조 (정관작성 세부기준) -----</p> <p>-----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u>관할구역</u> ----- -----.</p> <p>4. (현행과 같음)</p> <p>5. ----- <u>각 목</u> ----- -----.</p>

<p>가.~다. (생략) 6.~10. (생략)</p>	<p>가.~다. (현행과 같음) 6.~10. (현행과 같음)</p>
<p>제7조 (준공검사)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제2종시설물과 규칙에서 정하는 주요구조물에 <u>대하여는</u> 같은법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에 <u>대하여는</u>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준공검사 등에 <u>소요되는</u>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p> <p>③ (생략)</p>	<p>제7조 (준공검사) ① ----- ----- ----- ----- <u>대해서는</u> ----- ----- ----- <u>대해서</u> <u>는</u> -----.</p> <p>② ----- <u>필요한</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① 서울특별시 및 특별시·광역시·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는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p>1.~3. (생략)</p> <p>4. 징수청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징수금의 연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① ----- ----- ----- -----.</p> <p>1.~3. (현행과 같음)</p> <p>4. ----- ----- ----- ----- -----.</p>

<p>가. (생략) 나. <u>국·공유지</u> 다. (생략) 5. (생략) ② (생략)</p>	<p>가. (현행과 같음) 나. <u>국유지·공유지</u> 다.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특별회계의 용도)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7. 기존 주택단지를 도시개발사업에 <u>의하여</u> 리모델링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용자 8.~11.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u>규정에 불구하고</u>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당시 계획되었으나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사업에 <u>대하여는</u> 특별회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p>	<p>제11조(특별회계의 용도) ① ----- -----. 1.~6. (현행과 같음) 7. ----- -- <u>따라</u> ----- ----- 8.~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u>규정에도 불구하고</u> ----- ----- ----- ----- <u>대</u> <u>해서는</u> ----- -----.</p>
<p>제12조 (특별회계의 보조 범위)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u>범위 안에서</u>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2. (생략)</p>	<p>제12조 (특별회계의 보조 범위) --- ----- ----- <u>범</u> <u>위에서</u> -----. 1.~2. (현행과 같음)</p>

<p>제13조 (특별회계의 용자범위)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용자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u>범 위 안에서</u>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2. (생략)</p>	<p>제13조 (특별회계의 용자범위) ---- ----- ----- <u>범 위에서</u> -----. 1.~2. (현행과 같음)</p>
<p>제15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시 장이 영 제83조에 따라 도시개발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 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의 <u>규정에 의한</u> 한국예탁결제원을 등 록기관으로 지정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채권은 7년 거치 후 균등분할 상 환하도록 하고 <u>이율은</u> 연리 5퍼센 트 <u>범위 안에서</u> 「지방자치법」 제 124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정한다.</p>	<p>제15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 ----- ----- ----- ----- ----- <u>규정에 따른</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이자율</u>----- ----- <u>범위에서</u> ----- ----- -----.</p>
<p>제21조(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u>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21조(임기) ----- ----- <u>한 차례만</u> - ----- -----.</p>
<p>제2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 석한 위원에 <u>대하여는</u> 예산의 <u>범위</u></p>	<p>제25조(수당 및 여비) ----- ----- <u>대해서는</u> ----- <u>범위</u></p>

<p><u>안에서</u>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u>에서</u> ----- ----- ----- -----.</p>
<p>제26조 (관계서류의 인계) ① (생략)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제1항의 <u>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u></p>	<p>제26조 (관계서류의 인계) ① (현행과 같음) ② ----- <u>규정에 따른 ----- 관할 구청장</u>----- ----- -----.</p>
<p>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략)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 <u>이 없는 한</u>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③~④ (생략)</p>	<p>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없을 때에는</u> ----- -----. ③~④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에 대한 각 안들이 “자구수정”임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우 미 경